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 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처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4. 7.

나. 회부일자 : '97. 4. 10

3. 제안이유

○ 청소년수련시설의 증가로 행정수요감소와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자연학습원 시설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단체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원을 폐지

4. 주요골자

○ 폐지조례 시행일 : 임대(대부) 계약 체결일

· 자연학습원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일로 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행정수요 감소와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자연학습원 시설과 기능을

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단체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조직의 간소화와, 행정의 효율성, 도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본 학습원 설치 목적에도 있듯이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 정신을 증진시키고 단체훈련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능률한 기상을 키워 질서, 협동 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준 훈련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적자운영으로 본 학습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안 부칙 "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연학습원 시설의 임대(대부)계약 체결일 부터 시행한다."로 되어 있는데 현행 자연학습원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자연학습원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는 임대계약을 할수 없음에도 임대 계약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본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나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,

또한 부칙에서 처럼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하였을때 계약희망자가 없을 경우 도사업소로 자연학습원이 존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본 폐지조례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자칫 관리에도 소홀해 질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폐지안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